

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63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5. 3. 5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2조의2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
- 「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6조
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○ 필요성

- 2025년 경기도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에 따라
시 추진 「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지원」(측정사업)과
- 도에서 추진하던 「취약계층 이용시설 ‘맑은 숨터’ 조성 사업」(시설
개선사업)을 통합하여 시에서 최초 운영(도비 보조사업)
- ☞ 실내공기질 측정사업과 시설 개선사업을 연계하여, 사업의 효과성
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
이 필요함.

2. 위탁사무 내용

-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요령 안내
- 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
 - 사업 관련 업체, 환경개선 제품 선정 및 계약체결 관련 제반 사항
운영 관리
 - 현장 관리·감독 관련 제반 사항 운영
- 기존 ‘맑은 숨터’ 조성 시설 유지관리
- 정산 및 결과 보고, 자료제공·협조
-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

3. 위탁시설 개요

- 실내공기질 컨설팅 : 취약계층 이용시설 423개소
 - 실내공기질 측정하여 시설별 진단 및 유해인자 상관관계(외기상태와 미세먼지 농도 등) 분석
 - ※ 측정항목(6) : PM10, PM2.5, CO2, CO, 총부유세균, 곰팡이
- 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 : 10개소
 - 컨설팅을 받은 시설 중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해인자 제거를 위한 실내 환경 정비
 - ※ 타부서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
 - ※ 벽면 등 곰팡이 제거, 누수 벽면 방수 처리 페인트 시공 등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시공 지원
- 기존 ‘맑은 숨터’ 유지보수 : 8개소
 - 기존 ‘맑은 숨터’ 사후관리를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유지

4. 위탁 기간 : 9개월 (2025. 4. ~ 2025. 12.)

5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심의위원회 개최 후 선정

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소요예산 : 94,476천원(도비 30%, 시비 70%)
 - ※ 사업비에 위탁수수료 포함
- 사업량

(단위 : 개소, 천원)

구분	사업량	산출내역	비고
합계	-	94,476	도비 30%, 시비 70%
실내공기질 컨설팅	423	52,875	423개소 × 125,000원
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	10	40,001	10개소 × 4,000,100원
유지보수	8	1,600	8개소 × 200,000원

7.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부서 직접 추진 시, 담당자 1명이 423개소 이상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초과 여부 확인, 환경조사, 관계자 면담 등 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, ○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기관의 전문인력,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를 증대할 것으로 사료됨.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(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요령 안내, 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, 기존 ‘맑은 숨터’ 유지보수)을 하나의 기관에서 주관하여 연계성 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
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기관 대행
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다년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요령 안내가 가능하며,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내공간 환경개선지원 및 기존 맑은 숨터 시설 유지관리 가능
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시군종합평가 기준 공급목표 설정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해당없음
총 합 의 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‘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’은 남양주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,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며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.

8.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2025. 4. ~ 12. :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